##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강선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98

발의연월일: 2024. 6. 14.

발 의 자: 강선영·안상훈·백종헌

김기현 • 유용원 • 최수진

김 건 · 김선교 · 조지연

박준태 · 최보윤 · 김장겸

의원(12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(9·19남북군사합의)는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체결되었음.

그러나 북한은 합의 이후에도 창린도 해안포 사격, 한국군 감시초소 (GP)를 향한 총격, 해상완충구역 내 포격사격, 무인기 영공 침범, 탄도 미사일 발사 등 잦은 도발로 합의를 여러차례 위반해 왔음.

또한 2023년 11월 23일, 북한은 9·19남북군사합의 파기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뒤 합의에 따라 철수하였던 11개 감시초소(GP)에 감시소와 병영막사를 신축하고 중화기 반입 및 병력 투입을 통해 경계근무를 하고 있으며, 최근에는 GPS 교란, 대남 오물 풍선을 살포하는 등 연쇄 도발을 감행하고 있음.

이처럼 남북한이 함께 이행해야 하는 합의를 일방이 공식적으로 파

기 선언하고 연쇄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 근거 미비로 남한만 합의를 유지한 채 효력만 정지시키는 것은 안보에 지대한 영 향을 줄 수 있는 사안임.

이에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국가안전보장,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남북합의서를 파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23조). 법률 제 호

###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3조제2항 중 "기간"을 "남북합의서를 파기하거나 기간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그"를 "파기하거나 그"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3조(남북합의서의 효력범위	제23조(남북합의서의 효력범위
등) ① (생 략)	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중대	②
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국가안	
전보장,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	
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	
될 경우에는 <u>기간</u> 을 정하여 남	남북합의서를 파기
북합의서의 효력의 전부 또는	하거나 기간
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.	
③ 대통령은 국회의 체결·비준	③
동의를 얻은 남북합의서에 대	
하여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	<u></u> <u></u>
효력을 정지시키고자 하는 때	<u>기하거나 그</u>
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	
다.	·.